

[2011년도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

2011년도 국가직 9급 시험이 4월 9일 시행되었다. 검찰직이나 마약수사직과는 달리 교정직, 보호직, 철도 공안직의 경우 시험 과목명이 여전히 '형사소송법개론'으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형사소송법개론'과 '형사소송법'으로 굳이 구분해서 시험을 시행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10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아주 평이하게 출제가 되어, 대부분 학생들이 고득점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좀 더 난이도가 있게 출제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번 시험 문제에 대한 무료 동영상 강의와 정확하고 치밀한 분석에 대해서는 "윤경근 선생님의 Cyber 합격청☆부(cafe.daum.net/passchungbu)"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설문에 표시된 '객관식'은 2011년판 동의보감 합격청☆부시리즈(4) 객관식 형사소송법을 말합니다. 이 교재로 공부하신 분이시면 누구나 이번 시험에 100점을 맞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시험의, 그 어떤 형태의 형사소송법 문제라도 합격청☆부 형사소송법 객관식 형사소송법 한권이면 끝이 난다는 사실을 꼭 염두해 둡니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객관식 p.694 문제 21번 등 적중]

- ㄱ.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ㄴ.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ㄷ. 법관과 검사는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으나, 변호사는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 ㄹ.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있지만, 배심원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① ㄱ, ㄴ, 2 항목이 옳다.
 - ㄱ. 국참법 제7조
 - ㄴ. 국참법 제13조 제1항
 - ㄷ. 변호사도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국참법 제18조)
 - ㄹ.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국참법 제44조)

2. 자백의 보강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과 관련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객관식 p.835 문제 14번 등 적중]

- ①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 ③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나,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없다.



② 고소인의 경우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범죄**만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며, 고발인의 경우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범죄**만이 그 대상이 된다.(제260조 제1항)

① 대법원 1991.11. 5. 91도68

③ 제262조 제3항

④ 제262조의2

9.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객관식 p.299 문제 19번 등 적중]

- ①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②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③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
- ④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나,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는 이와 달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① 헌법재판소 2004. 9.23. 2000헌마138 ★ 다만, 이 판례는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명문으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②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1992. 1.28. 91헌마111)

③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제91조)

④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 6. 3. 96도18)

10.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객관식 p.524 문제 40번 등 적중]

- ① 검사가 길이 4~7cm인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판에 기초하여 위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경우 그 사용가능한 기간을 체포시로부터 역으로 추산한 다음 그 전 기간을 범행일시로 하고, 별다른 조사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를 범행장소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 ② “피고인이 2000년 1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사이에 ○○시 이하 불상지에서 분량 불상의 메스암페타민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
- ③ “1992년 2월경부터 1996년 6월 7일경까지 성명불상자들이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포탈하여 반입한 손목시계 9개, 시가 합계 금 4,230만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중간상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
- ④ 당첨이 된 손님들에게 위조상품권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오락기에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된 상품권을 여러 장 투입해 두고 그 후 오락기 이용자가 게임에서 당첨이 되면 오락기에서 자동으로 그 당첨액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한 죄의 공소사실을 “위조된 문화상품권 30,000장을 2006년 7월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9월 5일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경품용으로 지급하였다”라고 기재한 경우



④ 환송판결전의 원심에 참여한 재판관이 환송후의 원심 재판관으로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군법회의법 제48조나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9. 2.27. 78도3204) ★ 이 판례의 '군법회의법'은 2011년 현재 군사법원법을 말한다.

①②③ 제척사유가 된다.(① 대법원 1999.10.22. 99도3534 ② 제17조 제2호 ③ 통설의 입장이다.)

19.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객관식 p.54 문제 39번 등 적중]

- 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 ② 토지관할의 기준은 범죄지,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 ③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④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②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제4조 제1항)

- ① 제5조
- ③ 제10조
- ④ 제12조

20.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아닌 것은? [객관식 p.529 문제 49번 등 적중]

- ①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 ③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① 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규칙 제118조 제2항)

- ② 제267조의2 제1항
- ③ 제279조의2 제1항
- ④ 제307조 제2항

< 사례 문제 >

아래는 **동의보감 합격청☆부시리즈(4) 객관식 형사소송법**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벽한 교재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도와 드립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1. 제1심 법원은 피고인 甲에 대하여 판결(형벌)을 선고하면서 보증금은 몰수함이 없이 甲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였다. 보석허가결정이 취소되자 甲은 도주하였는 바, 이 보석보증금 몰수여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다만, 아직 甲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판례에 의함)

- 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없다.
- ② 결정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 ③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④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 ③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 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5.29. 2000도22 全합) 설문의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2. (1) 피고인 甲은 “피고인은 2007.10. 4.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피해자 乙(女)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회 강간하면서 약 25시간 乙을 감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제1심의 공판과정에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 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乙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 甲은 나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乙을 조사하였던 사법경찰관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사 당시 乙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대하여 증언을 하였다. (3)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검사 B는 乙을 소환한 후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추궁하면서 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였고, 검찰수사관 C는 乙의 진술내용을 요약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심 공판기일에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 丙은 이를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다. 위 사례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 | |
|-------------------|----------------------|
| ㉠ 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 ㉡ 사법경찰관 A의 법정증언 |
| ㉢ 검사 B가 작성한 영상녹화물 | ㉣ 검찰수사관 C가 작성한 수사보고서 |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① 모든 항목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9.25. 2008도6985)

㉠ 乙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는 乙이 제1심 법정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각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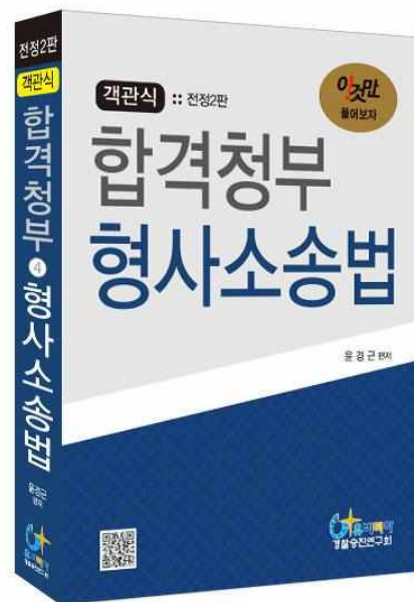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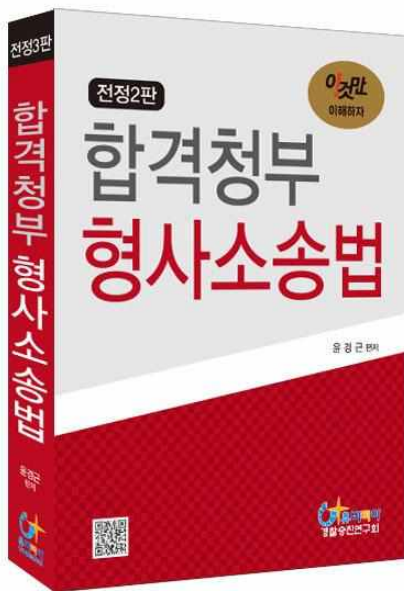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조사자 A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 乙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만 하는 것이라서, 원진술자 乙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을 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A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1)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반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중략)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검사 B는 乙을 소환하여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추궁하면서 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였고, 검찰수사관 C는 乙의 진술내용을 요약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검사는 원심 제3차 공판기일에 위 영상녹화물과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증거들에 대하여 부동의한 사실, 이에 검사는 원심 제4차 공판기일에 C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원심재판부는 그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위 증거들에 대하여도 증거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대한민국 어떤 시험, 어떤 형태의 문제는 합격청☆부시리즈가 끝을 내주마 !!

합격청☆부 **ART** 기본서 형사소송법

합격청☆부 **ART** 객관식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최강의 원-투 펀치 !! 더 이상의 수험서는 없다 !!

** 기출 뽀개기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90점을 날로 먹을 수 있다 **

** 4년간 실전 기출 형사소송법 - 완벽한 기출문제 분석이 수험생을 기다린다 **

형사소송법의 점수를 올려주는 소중한 공간

PassPlan 윤경근 선생님의 Cyber 합격청☆부(cafe.daum.net/passchungbu)